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59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김병욱·고용진·김예지

김종민 • 민병덕 • 박성준

서동용・송재호・양향자

이상헌 • 이성만 • 이원욱

정성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접대, 교제, 사례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정의하고 사업자가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 요건의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 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사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235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1234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 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접대비"를 각각 "대외활동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5조(대외활동비의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 필요경비 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불산입) ① ----대외활동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 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 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 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 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 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 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 ----대외활동비-----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 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외활동비-----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u>접대비</u>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 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가.·나. (생 략)
-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 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u>접대비</u>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 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 는 접대비
-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u>접대비(제2항에</u>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2. (생략)
- ④ (생 략)
- ⑤ 접대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대외활동비</u>